

## 大田直轄市올림픽紀念國民生活館設置運營條例(案)

|          |     |
|----------|-----|
| 議案<br>番號 | 513 |
|----------|-----|

提出年月日：1994. 12. .

提出者：大田直轄市長

### 1. 提案理由

'88 서울올림픽의 成功的 개최를 傳承 紀念하고 市民 體力向上과 健全한 餘暇善用に 寄與하고자 體育·文化·靑少年 複合施設로 建立한 올림픽紀念國民生活館을 效率的으로 管理 運營하기 위하여 大田直轄市 올림픽紀念 國民生活館 設置運營條例를 制定 하고자함.

### 2. 主要骨子

- 올림픽紀念國民生活館에서는 서울올림픽 關係 및 體育振興을 위한 展示·弘報事業과 地域社會 生活體育의 普及·育成事業, 市民 健全 餘暇善용 프로그램 開發·普及事業 등을 實施 하도록 함 (案 第3條)
- 管理·運營은 市 直營 또는 生活館의 事業을 遂行할 수 있는 非營利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도록 하며, 委託期間은 3年으로 하되 3年單位로 延長이 可能하도록 함 (案 第4條)

- 國民生活館의 管理者는 財産의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市長의 事前 承認을 얻도록 하였으며 取得한 財産은 取得과 同時에 市長에게 寄附採納하도록 함 (案 第6條, 第7條)
- 管理者는 國民生活館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도록 하되 無依託 老人, 生活保護對象者, 不遇靑少年 等に 대하여 50% 減額하도록 함 (案 第10條)
- 市長은 受託管理者가 條例에 規定한 目的外의 事業을 하거나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委託관리를 取消할 수 있도록 함(案 14條)

### 3. 參考 資料

- 施設概要
  - 位置 : 西區 葛馬洞 山 7番地
  - 規模 : 敷地 - 11,570.20m<sup>2</sup>,  
建物 - 6,390.32m<sup>2</sup> (지하2층, 지상3층)
  - 施設 : 室內水泳場, 小劇場, 室內體育館, 體育·文化·趣味教室, 幼兒教室 等

○ 關聯法規：地方自治法 第135條 第2項

第135條(公共施設)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公共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하여 다른 法令에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 대전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전승 기념하고 시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대전직할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이하“국민생활관”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국민생활관은 대전직할시 서구 갈마동 산 7 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자 (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88 서울올림픽 관계자료 및 체육진흥을 위한 전시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보급 및 육성사업과 시민체위 향상사업
3. 시민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4. 기타 국민생활관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관리 및 운영) ①대전직할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국민생활관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 이라 한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관리자의 의무) ①관리자는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다양한 시민정서함양프로

그럼 개발보급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장, 문화교육의 장, 청소년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국민생활관을 특정단체 및 특정인이 편중 사용하는 일이 없이 다수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생활관안의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재산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국민생활관 운영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탁관리자가 국민생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등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국민생활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변상조치) 국민생활관의 수탁관리자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보험 가입) 관리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관리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관리자는 국민생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불우청소년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의 50%를 감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은 별표1 내지 별표6과 같다.

제11조(회계 및 운영) ① 시 직영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특별회계로 하며 필요시 일반 회계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관리자는 국민생활관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관리자는 국민생활관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민생활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때

2. 국민생활관의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 운영을 하였을 때
3. 국민생활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하였을 때
4. 위탁관리 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수영장이용료

(단위 : 원)

| 구 분 |       | 입 장 료  | 비 고  |
|-----|-------|--------|--|
| 개 인 | 어 른   | 2,000  | ○ 체육진흥기금 포함<br>○ 단체라 함은 30명이상 동일소속으로 동시입장하는 자를 말함<br>○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입장하는자를 말함 |
|     | 청 소 년 | 1,400  |  |
|     | 어 린 이 | 1,100  |  |
| 단 체 | 어 른   | 1,500  |  |
|     | 청 소 년 | 1,100  |  |
|     | 어 린 이 | 800    |  |
| 월회원 | 어 른   | 40,000 |  |
|     | 청 소 년 | 30,000 |  |
|     | 어 린 이 | 20,000 |  |

【별표 2】

### 문화 및 취미교실 이용료

(단위 : 원)

| 프 로 그 램 명  | 운영시간 | 운영일수 | 월 회 비 | 비 고 |
|--|------|------|-------|-----|
| 1 주 1 시간 기준 월 10,000원<br>( 재료비 별도 이용자 부담 )<br>※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실정에 따라 조정 |      |      |       |     |

【별표 3】

### 스포츠교실 강습료

(단위 : 원)

| 구 분         | 1 일<br>운영시간 | 운영일수      | 월 회 비   | 비 고 |
|-------------|-------------|-----------|---------|-----|
| 헬스교실        | 어 른 자 유     | 주 6회      | 25,000  |     |
|             | 청 소 년       | " "       | 20,000  |     |
| 에어로빅<br>교 실 | 어 른         | 1 시간 주 6회 | 25,000  |     |
|             | 청 소 년       | " "       | 20,000  |     |
| 구기교실        | 어 른         | 90분 주 5회  | 10,000  |     |
|             | 청 소 년       | " "       | 8,000   |     |
|             | 어 린 이       | " "       | 6,000   |     |
| 투기교실        | 어 른         | 1 시간 주 5회 | 25,000  |     |
|             | 청 소 년       | " "       | 20,000  |     |
|             | 어 린 이       | " "       | 15,000  |     |
| 체형미교실       | 어 른         | 2 시간 주 3회 | 150,000 |     |
|             | 청 소 년       | " "       | 100,000 |     |
| 유 아 체 능 교 실 | 3 시간        | 주 5회      | 45,000  |     |

【별표4】

### 전시실 사용료

(단위 : 원)

| 구 분     | 사 용 료      | 비 고                                    |
|---------|------------|--|
| 평 일     | 1 일 20,000 | o 대관시간 : 09 : 00 ~ 18:00<br>o 조명사용료 포함 |
| 토·일·공휴일 | 1 일 25,000 |  |

【별표 5】

### 소극장사용료

(단위 : 원)

| 구분        |    | 체육행사   | 일반행사   | 비고   |
|-----------|----|--------|--------|--|
| 평 일       | 주간 | 28,000 | 40,000 | ○ 주간 : 09:00 ~ 17:00<br>○ 야간 : 17:00 ~ 21:00 |
|           | 야간 | 35,000 | 50,000 |  |
| 토. 일. 공휴일 | 주간 | 35,000 | 50,000 | ○ 앰프사용료 포함<br>○ 조명사용료 별도                     |
|           | 야간 | 42,000 | 60,000 |  |

【별표 6】

### 체육관사용료

(단위 : 원)

| 구분        |      | 사용료   | 비고      |   |
|-----------|------|-------|---------|---|
| 평 일       | 체육행사 | 주간    | 30,000  | ○ 주간 : 09:00 ~ 17:00<br>○ 야간 : 17:00 ~ 21:00                        |
|           |      | 야간    | 45,000  |   |
|           | 일반행사 | 주간    | 90,000  |   |
|           |      | 야간    | 135,000 |   |
| 토. 일. 공휴일 | 체육행사 | 주간    | 40,000  | ○ 앰프사용료 포함<br>○ 조명사용료 별도  |
|           |      | 야간    | 60,000  |   |
|           | 일반행사 | 주간    | 120,000 |   |
|           |      | 야간    | 180,000 |   |
| 입장료       | 개 인  | 어 른   | 1,700   | ○ 입장료는 프로그램 이용이 없는 경우 연습이용에 적용<br>○ 단체는 30명이상 동일소속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함 |
|           |      | 청 소 년 | 1,300   |   |
|           |      | 어 린 이 | 1,000   |   |
|           | 단 체  | 어 른   | 1,400   |   |
|           |      | 청 소 년 | 1,000   |   |
|           |      | 어 린 이 | 700     |   |